

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1989. 11. 9	조례 제 569호
개정	1994. 7. 13	조례 제 837호
	1996. 10. 11	조례 제 960호
	1997. 1. 15	조례 제1004호
	1998. 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5. 4. 21	조례 제1382호(제명개정 포함)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08. 6. 16	조례 제1592호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6. 3. 16	조례 제2169호
일부개정	2016. 11. 18	조례 제2208호
일부개정	2017. 3. 12	조례 제2244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9. 8. 2	조례 제2508호(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7. 1. 15, 2005. 4. 21, 2008. 6. 16, 2017. 3. 12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96. 10. 11, 2008. 6. 16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96. 10. 7, 2008. 6. 16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97. 1. 5, 2005. 4. 21, 2008. 6. 16, 2016. 11. 18, 2019. 8. 2>

1.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국장
2.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
3. 감정평가사
4. 공인회계사, 세무사
5. 개업공인중개사
6.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
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)에서 추천한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⑤ 위원회는 심의 전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~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4. 21, 2008. 6. 16, 2020. 3. 25>

⑥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3조의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
2.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인정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5. 제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[본조신설 2016. 3. 16]

제3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 <개정 2017. 3. 12>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[본조신설 2016. 3. 16]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1.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2.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4.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, 표준주택,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8. 6. 16]

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공시지가 담당 및 실무자가, 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주택가격 담당 및 실무자가, 비주거용 부

동산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담당 및 실무자로 한다. <개정 96. 10. 11, 98. 9. 23, 2008. 6. 16, 2017. 3. 12>

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 <개정 97. 1. 15>

제8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,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그 밖의 중요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10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1. 8. 9, 2018. 7. 31, 2020. 3. 25>

제11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12조(회의의 비공표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3. 2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4. 7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0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5. 4. 21 조례 제1382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한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는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㉖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3. 16 조례 제21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1. 18 조례 제22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4호>

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8. 2 조례 제2508호,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